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의자 : 전혜연, 이진환,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김지훈(민)

1. 제안이유

우리시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 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⑪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장, 서기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신 설> ④ (생략)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심사하기 -----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한 때
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
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
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
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
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
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신 설>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⑪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